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2019년 4월 29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4. 28.(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4. 28.(일)	담당부서	산업기술개발과
담당과장	이재식 과장(044-203-4530)	담 당 자	조원철 사무관(044-203-4534)

산업기술 R&D "속도와 도전" 본격 추진

- 외부기술 도입을 통한 신속한 기술개발과 도전적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R&D 관리규정 개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월 29일(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산업기술 R&D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하였다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부 고시)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부고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산업부 예규)

○ 개정안은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19.3.26) 중 **❶Plus R&D**, **❷산업 난제를 푸는 도전적 프로젝트**, **❸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역량강화**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와 **❹연구 환경 개선** 내용이 **반영**되었다.

1 앞으로 **산업기술 R&D**는 **"신속한 기술개발"**을 우선 고려한다.

○ 이를 위해 연구수행자는 **'기존 기술의 도입을 통한 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방안'**을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고, **신규평가**에서도 이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산업기술 R&D 전반의 개발 **'속도'**가 **단축**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변**하는 **외부환경 변화**에 **적기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2 **산업의 난제를 푸는 '도전적 프로젝트'**(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시행**을 위해 기획부터 평가방식까지 **사업추진 방식**을 **전면 개선**하였다.

*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19.6월 시범사업(국비 100억원 규모)을 추진하고, '20년부터는 과기부와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본격 시행될 예정(예타 추진 중)

○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과제의 **신규평가**는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공개평가**를 실시하고, **최종평가**도 성공이나 실패 등 **등급 부여 방식이 아닌 산업적 파급력**을 포함한 연구개발 결과를 **공개행사**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평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도전적 프로젝트**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자문·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존 R&D 규정**과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R&D 현장 인력의 역량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및 **제도개선**도 시행된다.

○ **인력양성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학생연구원**을 **기업**에서 **R&D 인력**으로 위촉하면 학생인건비 외에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며, 신규과제 선정시에 '**연구인력 활용**계획**'을 **평가지표**로 신설하였다.

* 동일 R&D 과제를 수행한 컨소시엄 내 학생연구원을 과제 종료후에 채용하여 2년 이상 재직토록 한 중소·중견기업에 우대 배점 부여(3점)
** 연구인력 투입 계획, 과제수행 중 신규채용 및 고용유지 계획, 과제 종료 후 사업화 기간에 일자리 효과 등 인력활용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

4 아울러, **산업기술 R&D 연구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 **사업비 잔액**을 승인 없이 **이월 가능**하도록 하였고, **박사후연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업계획서에 **근로계약서 첨부**를 **의무화**하며, 경상기술료를 징수하는 연구자 외에도 **경상기술료**를 **납부**하는 기업에도

우대 가점(2점)을 부여하는 한편, **산업 위기지역 소재 중견기업***의 **민간부담금**을 **완화**(50%→35%) 하기로 했다.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민간부담금 완화(33%→20%)는 실시중('18.12월~)

○ 또한, 사업비 정산 결과 **직접비 집행**이 **저조**하면 **간접비·연구수당**의 일정 부분을 **반납**토록 하였고, 연구 과정에서 무분별한 외주 용역 방지를 위해 **핵심 공정·기술**은 **외주용역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연차별 **간접비 계상시점**을 사업비 지급시점(年初)으로 **명확화**하였다.

□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산업기술 R&D의 "속도와 도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산업기술 R&D의 전략성 강화, 연구환경 개선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산업부는 4월 30일(화)부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 R&D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특허등록**하는 행위에 대해서 **참여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는 내용이다.

○ 이 외에 R&D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과학기술기본법령**과 **일치**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다.

【붙 임】 1. 산업기술 R&D 규정개정 주요 내용(요약)
2. 산업기술 R&D 규정개정 주요 내용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문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조원철 사무관(☎044-203-45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업기술 R&D 규정개정 주요 내용(요약)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시행	· 신규평가시 공개평가, 무기명 현장투표 방식으로 선정 · 최종평가시 공개발표, 등급(성공, 실패) 미부여 · 산업적 파급력 관점에서 최종평가 실시
Plus R&D 시행	· 기존 기술 도입을 통한 기간단축, 사업비 절감 우대
기업R&D인력 역량강화	· 선정평가시 '연구인력 활용계획' 평가 · 인력양성 우수기업 우대 · 학생연구원의 기업 위촉시 인건비 지원
연구환경 개선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견기업 민간부담금 완화(現50%→改35%) *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민간부담금 기완화(33%→20%, 2018.12.13.) · 승인 없이 사업비 잔액 이월 가능 · 박사후연구원 근로계약서 첨부 의무화 · 청년 채용 기준(현 35세) 완화 (군복무기간 추가 등) · 부채총액 제외기준 완화 (제외가능 대출형 투자투제 확대) · 경상기술료 납부기업에 가점 부여(2점) · 3책5공 제외과제 완화 (現 마감 4개월 이내 → 改 6개월)
기타	· 직접비 집행 저조시 간접비, 연구수당 감액(국회지적) · 성과공유제 가점 대상 조정 (現 도입기업 → 改 완료기업) · 연차별 간접비 계상시점 명확화(매년 초) · 과제중복기준 명확화(연구목표·방식·수행방식이 다르면 중복 예외) · 외주용역 범위 제한(핵심 공정·기술 외주 불가), 3천만 원 이상 외주용역은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사전 검토

붙임2 **산업기술 R&D 규정개정 주요 내용**

1.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후속

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공통운영요령 제2, 49조, 기술개발평가지침 제6, 19, 39조)

-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기획***을 할 수 있도록 "초고난도 과제" **개념**** **정의**

* '19년 시범사업(100억원), '20년 이후 산업부-과기부 협업과제 추진(예타 준비)
** (개념) 산업적 난제 해결을 위한 기술로, 개발 완료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나 실패 가능성이 높은 과제로 공고시 명시한 경우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 **무기명 방식**으로 **공개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산업적 파급력 관점**에서 **최종평가** 실시(성공, 실패 등급 미부여)

* 평가위원회는 연구조합, 협회, 학회 등 산학연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

- 또한, 현 R&D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사업 추진**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특례 조항** 마련 (자문위원회, 유연성 검토 평가위원회 구성·활용)

② **Plus R&D** (공통운영요령 제21조, 표준서식)

- 사업계획서에 **'기존 기술 도입을 통한 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

- **'기존 기술 도입·활용의 적정성'**을 신규평가 **검토 항목**에 **신설**

③ **기업 R&D인력 역량강화** (기술개발평가지침 제20조, 사업비요령 별표2, 표준서식)

- **신규과제 선정 평가지표**에 **'연구인력 활용'** 신설

* 연구인력 투입계획, 과제수행 중 신규채용 및 고용유지 계획, 과제 종료 후 사업화 기간에 일자리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과제종료 후 **인력양성 우수기업**에 **가점*** 부여 및 **학생 연구원**을 **기업 R&D 인력**으로 위촉하면 학생인건비 외 **추가인건비 지원**

* 동일 R&D 과제를 수행한 컨소시엄 내 학생연구원을 과제 종료 후 채용하여 2년 이상 재직한 기업에 우대배점(3점) 부여

2. 연구환경 개선

① **사업비 잔액 이월 허용** (공통운영요령 제27조, 사업비요령 제2, 13조, 별표4)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의 집행 **잔액**은 회수하지 않고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이월** 사용 허용

② **박사후연구원 근로계약 의무화** (사업비요령 별표2, 별표4, 별표5)

- 사업비 정산시 박사후연구원 근로계약서 첨부 의무화

③ **청년채용 기준 완화** (공통운영요령 제25조, 제26조, 사업비요령 별표4)

- **나이 기준**(현 만35세)에 **군 복무기간 추가하고, 자발적 퇴사자** 발생시 **2개월 유예** 허용(현재 유예기간 없어 추가채용까지 공백 기간 인건비 반납)

④ **부채총액 제외 기준 완화** (기술개발평가지침 별표2)

-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한 **대출형 투자 주체**를 현 한국벤처캐피털협회 회원사 외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 추가**

⑤ **경상기술료 실적 우대** (기술개발평가지침 제20조)

- 국가 R&D 성과를 **이전** 받아 **경상기술료**로 **납부**하는 **기업**에 **가점 부여** 등 경상기술료 실적 우대 (1.8일 과기장관회의 안건)

⑥ **3책 5공*** **예외기준 완화** (공통운영요령 제20조)

* 연구자 개인의 연구 몰입도 향상을 위해 연구자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국가 R&D 과제수를 5개 이내로 제한 (이중 연구책임자로는 3개만 참여)

- 현행 신청마감일 **4개월 이내 종료** 과제 → **6개월 이내**

⑦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견기업 민간부담금 완화** (공통운영요령 제24조)

- 위기지역 소재 기업 **민간부담금 완화**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민간부담금 비중**을 **35%**로 **조정** (혁신제품형, '19.1월 VIP 간담회 후속)

3. 기타

① **비영리기관의 간접비 계상기준 명확화** (사업비요령 제6조)

- **다년도**(일괄/단계) **협약과제**의 **연차별 간접비**는 **수행기간 시작시점**(年初)에 과기부 고시 간접비율로 계상

② **부적정한 연구비 수령 제한** (사업비요령 제11조, 별표4)

- **직접비 집행**이 **저조**하면 **간접비, 연구수당 감액** ('17년 국회지적)

③ **과제 중복기준 명확화** (공통운영요령 제21조, 기술개발평가지침 별표2)

- 유사한 연구주제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에는 연구과제 **중복**의 **예외** 사유로 인정

④ **성과공유제 참여기업 우대 개선** (기술개발평가지침 제20조)

- 현행 성과공유제 과제 **도입**한 **기업** → **과제**를 **완료**(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한 **기업**으로 **가점** 대상 개선 (중기부 요청)

⑥ **외주 용역에 대한 관리 강화** (사업비요령 제5조, 별표4)

- **외주 용역비 산정**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3천만원 이상**의 용역은 **사업계획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

⑦ **기타 문구 조정**

- 오기* 수정 (사업비요령 제16조)

 * 본문에 수행기관 현물출자 확인서 서식번호 오기

- 연구지원 전문가 인건비 지급기준 명확화 (사업비요령 별표3)

 * 지급 기준을 '교육 이수' → '교육 수료'(교육 이수 후 소정의 시험 통과)로 명확화

- 연구발표회 확정절차 개선에 따른 문구정리 (기술개발평가지침 제36조)

 * 장관 '확정' 후 전담기관이 주관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는 문구 삭제

- 협약체결 중지 사유 명확화 (기술개발평가지침 제32조)

 * 공통운영요령 협약체결 중지 사유(신청자격 및 수행자격에 결격이 있는 경우)와 일치

- 신청자격 검토 시 부채총액 제외 기준* 명확화 (기술개발평가지침 별표2)

 *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의 차입기간을 '최근 2년간'으로 명확화

붙임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고, R&D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금지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과기부 등 다른 부처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제재에 따른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명의 특허등록에 대한 제재 강화 (별표1, 2)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1년)을 과학기술기본법령과 동일한 수준인 2년으로 확대 (별표1 제2호 가목 5)항)하고,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업비 환수 실시 (별표2 제8호)

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수위를 과학기술기본법규와 일치(별표1, 2)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2년 이내'에서 '2년'으로 조정 (별표1 제2호 가목 3)항)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어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조정 (별표1 제2호 가목 4)항)

3) 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2년 이내'에서 '2년'으로 조정 (별표1 제2호 가목 11)항)

4)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사업비 환수 범위를 현행 '편취 또는 유용금액'에서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로 조정 (별표2 제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 전자우편 : hwp172@motie.go.kr - 팩스 : 044-203-47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전화 044-203-4534, 팩스 044-203-47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4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1. 개인명의 특허등록 제재강화

현 행

[별표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제14조의3제3항 관련)

1. (생략)
2. 참여제한 기간 가. (생략)

참여제한 사유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5)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 제6호의2	1년

[별표2]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

(제14조의3제4항 관련)

참여제한 사유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8.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 제6호의2	환수하지 않음

개 정

[별표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제14조의3제3항 관련)

1. (생략)
2. 참여제한 기간 가. (생략)

참여제한 사유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5)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 제6호의2	2년

[별표2]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

(제14조의3제4항 관련)

참여제한 사유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8.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 제6호의2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2. 제재수위 정비 (과학기술기본법령과 일치)

현 행

[별표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제14조의3제3항 관련)

1. (생략)
2. 참여제한 기간 가. (생략)

참여제한 사유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3)정당한 사유 없이 (중략)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생략)	2년 이내
4)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생략)	1년
11)(전략)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생략)	2년 이내

[별표2]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

(제14조의3제4항 관련)

참여제한 사유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6.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생략)	편취 또는 유용금액

개 정

[별표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제14조의3제3항 관련)

1. (생략)
2. 참여제한 기간 가. (생략)

참여제한 사유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3)정당한 사유 없이 (중략)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생략)	2년
4)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생략)	2년
11)(전략)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생략)	2년

[별표2]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

(제14조의3제4항 관련)

참여제한 사유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6.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생략)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